

「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」 개정내용

현 행 (‘12. 1)	개 정 (‘19. 9)	개정 사유
<p>□ 적용대상</p> <p>○ 일반용역 중 청소·경비·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</p>	<p>□ 적용대상</p> <p>○ 일반용역 중 청소·경비·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<u>및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용역에 적용</u></p> <p>- <u>공공기관 등의 자회사가 위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에 적용</u></p> <p>* <u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지방공기업법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을 말함</u></p>	<p>○ 적용대상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결과</p> <p>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용역은 당초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현장에서 혼선이 있어 적용대상에 명시하고,</p> <p>-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회사도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음</p>